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 27 선고 2020가단1305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2나5710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 27 선고 2020가단130504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열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상

담당변호사 한경민

변론종결 2021. 11. 4.

판결선고 2022. 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1. 6. 27. 접수 제152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8,5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1. 6. 27. 접수 제152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5. 29. 별지 목록 기재 토지(2001. 6. 9.경 이전에는 지목이 “하천”으로 이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기도로부터 105,705,000원에 매수하여 2001. 6.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6. 27. 피고 앞으로 2001.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의 아들인 C과 피고의 형인 D은 인척관계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대여하고 대여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2001. 5. 29. 원고에게 108,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약정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서수정

목 록

의왕시 E 담 1,566㎡. 끝 .

